

보도 일시	2022. 7. 13.(수) 09:00 2022. 7. 13.(수) 석간	배포 일시	2022. 7. 13.(수) 09:00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 양현수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 이철 호 (044-202-8904)

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(7.13.)

- 50인 미만 제조업 1,800여 개 고위험사업장 선정 →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을 통해 자율 안전관리체계 관심 갖도록 유도하고 지원
- 전국 근로감독관 등 1,300여 명 → 온열질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‘물, 그늘, 휴식’ 등 예방조치 준수 여부 점검도 병행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오늘(7.13.) ‘현장점검의 날’ 을 맞아 제조·건설업 등 1,9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*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.

* (3대 안전조치) ① 추락 예방조치, ②끼임 예방조치, ③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

- 특히 이번에는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,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500여 개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했다. (향후 1,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)

〈 고위험사업장 선정 방법 및 기준 〉

- (1단계)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131,000여 개소를 규모 및 세부 업종별로 구분
- (2단계) 1단계에서 분류된 사업장을 아래(①~⑤) 항목으로 세분화점수화(3등급)하여 사업장별 위험도 산정
①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사업장, ②10대 위험 기계·장비(컨베이어, 크레인, 지게차, 승강기, 산업용 로봇, 혼합기, 분쇄기, 식품가공용기, 사출기, 프레스) 등 보유 사업장, ③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, ④밀폐공간 보유 사업장, ⑤화학설비 보유사업장 등 → 각 항목을 3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점수화
- (3단계) 위험도 평균이 해당 업종·규모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,800여 개소 선정

-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지 않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큰 만큼 위험도를 기준으로 고위험사업장*을 선별하여

* '22.6월 말 기준(잠정) 제조업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100명 / 5~49인 사업장은 36명, 300인 이상 사업장은 29명, 50~299인 사업장은 20명, 5인 미만은 15명 순으로 발생 → 이번에 선정한 고위험사업장 1,800여 개소 중 3개소에서 올해 3명(5~49인 사업장의 36명 중 8.3%)의 중대재해 발생

- 기본적인 3대 안전조치 점검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업이 자율의 안전관리체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.

〈 5인~49인 사업장의 3대 안전조치 관련 사고사례 〉

- '22.1월 냉각기 내부 잔재물 제거 중 작동하는 기계에 끼임(정비·청소 시 운전정지 등 미이행)
- '22.6월 작동 중인 설비를 정비하던 중 갑자기 하강하는 슬라이드에 끼임(정비 시 운전정지 등 미이행)
- '22.6월 금형 내부 청소(에어건 분사) 중 플레이트와 형틀 사이에 끼임(청소 시 운전정지 등 미이행)

-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「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(7.11.~8.19.)」을 운영하면서 현장점검의 날(7.13.)에 맞춰

- “전국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1,300여 명을 동원하여 열사병 예방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병행한다” 라고 하면서 “실내·외 작업을 할 때는 예방수칙을 이행하여 달라” 라고 당부했다.

〈 실외 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 〉

- (물)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
- (그늘) 실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벽히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
- (휴식) 폭염특보 발령 기간에는 매 시간마다 10~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제공,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 실외 작업 최소화

〈 실내 작업 시 온열질환 예방조치 〉

- **(냉방장치)** 실내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작업장 내 냉방장치(공기순환장치, 냉풍기 등) 설치
- **(환기)** 냉방장치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기적 환기를 통해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보냉장구(아이스조끼, 아이스팩) 지급·착용
- **(작업일정 조정)** 냉방장치 설치, 환기 등의 조치에도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 업무량 조정, 휴식시간 부여, 긴급하지 않은 작업의 일정 변경 등 작업일정 조정

□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“50인 미만 제조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 모두가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만들고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”라고 하면서

- “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□ 또한 최근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

- “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*와 작업강도가 높거나 힘든 작업**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전·후 동료 작업자들과 함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고”

* 고령자, 비만, 당뇨, 고혈압·저혈압 등 질환자, 온열질환 이력자, 폭염·노출 작업 신규 배치자 등

**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고열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(건설 현장에서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수작업으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 등)

- “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1.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

2.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

3. 온열질환 자가진단표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양현수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이철 호 (044-202-8904)
			주무관	남영우 (044-202-8908)
<공동>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본부 사업총괄부	책임자	부 장	유영수 (052-703-0611)
		담당자	차 장	김해현 (052-703-0614)



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

이것만은 꼭 지키세요!



시원하고 깨끗한 **물** 제공



실내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**냉방장치 설치** 또는 **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주기적 환기**



폭염특보 발령시 1시간 주기로 **10-15분이상 규칙적인 휴식**

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추가 조치 필요시 **목외작업의 폭염단계별 대응 요령**을 참조하세요.

물 그늘 휴식

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

☑ 폭염 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·경보 발령

• 기상청 「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 홈페이지 및 날씨알리미 앱」 첫 화면의 온도 옆 “체감(00℃)”으로 표시

* 체감온도 :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현재 온도보다 덜 덥게 느끼고,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
기온에 습도, 바람 등의 영향을 더해 사람이 느끼는 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

폭염 주의보 · 일 최고 체감온도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·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

폭염 경보 · 일 최고 체감온도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·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



☑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입니다.

물



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 /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

그늘



✓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(휴식 공간)를 마련하여야 합니다.
-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소음·낙하물·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합니다.
-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의자나 돗자리,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비치합니다.

휴식



✓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,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
✓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무더위 시간대(14~17시) 옥외작업을 피해야 합니다.
- 업무량이나 속도를 줄이거나 신체부담이 덜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.
✓ 근로자가 열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.
▲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▲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

◆ 폭염특보 시 외부온도로 인해 실내·외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높은 실내 사업장은 아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(예시) 천막창고 등 임시 시설 내 작업공간 또는 연면적이 넓은 등 작업장 특성상 전체 냉방이 곤란한 작업장소

• 실내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작업장 내 냉방장치*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

* 주요 냉방장치 : 공기순환장치(환기장치), 선풍기, 냉풍기, 이동식 에어컨 등

• 냉방장치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창문이나 출입문을 여는 등 더운 공기가 실내에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아이스조끼·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·착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• 냉방장치 설치, 환기 등의 조치에도 실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 원인을 파악한 후 추가 대책을 수립*하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.

* 냉방장치 추가 설치 및 작업장 환기 방법 개선 → 불가피한 경우 업무량 조정 및 휴식 시간 부여, 긴급하지 않은 작업은 일정 계획 변경

※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옥외작업의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참조하세요.

☑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에 따라 조치하십시오.

※ 지역별 폭염 단계는 기상청 「날씨누리(www.weather.go.kr) > 날씨 > 기상특보 > 영향예보 > '산업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관심

체감온도
31°C 이상

- ✓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(또는 날씨알리미 앱) 등을 통해 기상 상황 확인,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(휴식 공간) 준비
-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 및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 사전 확인·구분

• 온열질환 민감군이란?

- ▲ 비만, 당뇨, 고혈압/저혈압 등 질환자 ▲ 온열질환 과거 경험자 ▲ 고령자 ▲ 폭염 노출작업 신규배치자

•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이란?

- (작업 예시) 삽·망치·괘·괘·도끼를 이용하거나 건설현장에서 형틀·철근·타설 작업 등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또는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

주의

체감온도
33°C 이상

또는 폭염주의보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(휴식 공간) 제공
- ✓ 매시간 10분씩 그늘(휴식 공간)에서 휴식하기
 -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
- ✓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
- ✓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



경고

체감온도
35°C 이상

또는 폭염경보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(휴식 공간) 제공
- ✓ 매시간 15분씩 그늘(휴식 공간)에서 휴식하기
 -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
- ✓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
 -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
- ✓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
-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



위험

체감온도
38°C 이상

- ✓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(휴식 공간) 제공
- ✓ 매시간 15분 이상씩 그늘(휴식 공간)에서 휴식하기
 -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
- ✓ 무더위 시간대(14시~17시)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
 -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
- ✓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
- ✓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

☑ 응급상황 대처 (주요 증상 발현시)

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,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,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!

※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건강상태를 작업전·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

폭염 시에는 항상 안전사고를 주의하세요!!

-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
- 집중력저하로 인한 떨어짐,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



야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



☒ 본 진단표는 폭염으로부터 공사장 등 **야외근로자의 온열질환 취약도**를 선제적으로
판별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음.

구분	문항내용	예	아니오
1	오늘 아침 전과 다르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.	☐	☐
2	최근 활동 후 쉬었으나 몸의 열이 식지 않는다고 느낀다.	☐	☐
3	아래의 질환이 있거나, 약을 복용하였다. ● 질환 : 당뇨, 고혈압, 심장병, 신장병, 피부질환, 정신질환 ● 약 : 감기약, 멀미약, 수면유도제, 혈압약, 이뇨제, 신경·정신질환약	☐	☐
4	어젯밤 설사, 음주로 인한 숙취, 근심걱정 등으로 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다.	☐	☐
5	최근 힘든 일이 있어 심신이 지쳐있다.	☐	☐
6	평소 에어컨을 틀어두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위를 쉽게 느낀다.	☐	☐
7	온열질환으로 인한 증상(어지러움, 두통, 열 등)을 경험한 적이 <u>없다</u> .	☐	☐
8	나는 일을 시작하게 되면 쉴새 없이 전념하게 된다.	☐	☐
9	폭염기간이라도 계획대로 반드시 외부작업 혹은 활동을 진행하려 한다.	☐	☐
10	나에게 맡겨진 일을 가급적 스스로 하며, 일일이 챙겨 끝까지 처리하려 한다	☐	☐

※ 행정안전부 연구과제 ‘폭염 직접피해자의 사회·환경 원인분석 기술개발(2020~2024, 주관연구:충북대학교)’의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음.
※ 폭염기간 당일 작업 전 시행하며, 판별점수는 해당일의 취약 정도임(점수가 높을수록 온열질환 경험 가능성도 연계됨)

판 별	‘예’의 갯수	0~2개	3~6개	7개 이상
	온열질환 취약도	낮음	보통	높음
	비고	-	보통 정도의 주의	폭염 시기 높은 주의가 필요함